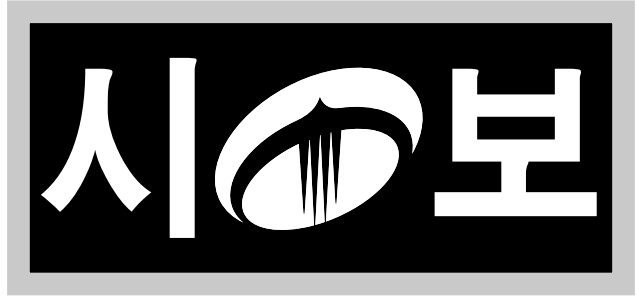


# 포 향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22호                      2009. 3. 31(화)

선	기    관    의    장
람	

## 포 향 시

○ 시장지시사항 ..... 2

### ◀ 규 칙 ▶

○ 포향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제511호) ..... 6

### ◀ 입법예고 ▶

○ 포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09-487호) ..... 11

### ◀ 공 고 ▶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제 2009 - 495호) ..... 15

○ 공 인 공 고(제2009 - 497호) ..... 21

회									
람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상의 전환을 통한 시정발전 아이디어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직된 사고에 의한 틀에 박힌 업무추진이 행정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틀을 180°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li> <li>- 신문, 뉴스, 다른 사례 등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바꾸어 보자</li> </ul> </li> </ul>	전 부 서 (전략경영팀)
'09-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시정 홍보 적극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거주 주한일본인 동호회인 서울재팬클럽에 포항을 확실히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li> <li>- 전국의 인터넷신문을 전수조사하고 정기적으로 포항시정을 기사거리로 제공하여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li> </ul> </li> </ul>	공보담당관실 (일본T/F팀)
'09-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물동량 확보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일만항 개항을 앞두고 LG, 현대, 기아 등 대화주를 방문하여 항만물동량 유치에 협조를 구하고,</li> <li>- 포항인근 기업들의 물동량 파악을 철저히 하여 반드시 영일만항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li> </ul> </li> </ul>	항만정책팀
'09-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물 및 소규모 건물 테라노바 적용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시청 외 학교 등 일반 공공기관의 건물 건축시 해당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테라노바 적용을 검토하여 도시경관 조성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li> <li>- 구청소관의 소규모 건물 건축허가 시에도 테라노바 적용을 유도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li> </ul> </li> </ul>	테라노바팀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일자리 만들기와 유대강화 추진</li> <li>- 불빛축제 축소 및 절약재원의 일자리 창출 투입과 관련 Posco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홍보할 것이며,</li> <li>- 시장의 Posco 현장 특강실시와 새로운 CEO와 대화 하는 등 유대강화를 추진하기 바람.</li> </ul>	자치행정과
'09-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메뉴얼 작성활용</li> <li>-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추진 매뉴얼을 만들어 업무의 지속적인 향상방안을 강구 할 것</li> </ul>	자치행정과
'09-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경주</li> <li>- 내년에는 사업추진상 많은 예산투입이 필요하므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li> <li>-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은 적극 구상하고 기존 계속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조속히 국비확보를 추진하기 바람.</li> </ul>	기획예산과
'09-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틸러스 시즌카드 구입확대</li> <li>- 시즌카드 구입확대는 관중동원 증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li> <li>- 각 부서별 관심을 가지고 시즌카드 판촉활동에 노력 하기 바람.</li> </ul>	체육지원과
'09-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해면 발산리 봉장어 활용아이디어 개발</li> <li>- 동해 발산의 봉장어와 관련하여 먼저 음식개발 아이디어를 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li> </ul>	해양수산과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0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자원 확보에 노력바람.</li> <li>- 산업단지 조성 과 도시 성장에 필수적인 지역의 수자원 확보를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라며,</li> <li>- 특히, 장기지역의 수자원 확보방안을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li> </ul>	상수도과

**규 칙**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3월 31일

포항시 규칙 제 511 호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팀장·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팀장·과장(일상경비)” 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3호중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팀장·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팀장·과장(일상경비)”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구 청 읍 면 동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건 설 환 경 사 업 소 문 화 예 술 회 관 농 산 물 도 매 시 장 관 리 사 무 소 상 수 도 사 업 소 여 성 문 화 회 관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시 립 도 서 관 포 향 미 술 관 서 울 사 무 소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외의 관서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b></p> <p>① (생략)</p> <p>1. 본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li> <li>·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li> <li>세외수입업무 주관담당관·팀장·과장</li> <li>·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국장</li> <li>·<u>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u></li> <li><u>담당관·팀장·과장(여비, 업무추진비,</u></li> <li><u>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u></li> <li><u>비)</u></li> <li>·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국장</li> <li>·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팀장·과장</li> <li>·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과장</li> <li>·채무관리관 - 소관 담당관·팀장·과장</li> <li>·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과장</li> <li>·지출원 - 지출업무담당</li> <li>·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 세</li> <li>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li> <li>·<u>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팀·과</u></li> <li><u>서무업무담당</u></li> <li>·<u>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 담</u></li> <li><u>당자</u></li> </ul>	<p><b>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b></p> <p>① (현행과 같음)</p> <p>1. 본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li>·<u>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u></li> <li><u>담당관·팀장·과장(일상경비)</u></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ul>



현 행	개 정 안
<p>2. (생략)</p> <p>3. 제1관서(읍·면·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 별도 지정)</p> <p>·징수관 - 관서의 장</p> <p>·분임징수관 - 해당 세입업무담당 과장</p> <p>·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p> <p>·<u>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팀장·과장(여비, 업무 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u></p> <p>·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p> <p>·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p> <p>·지출원 - 경리업무담당</p> <p>·수입금출납원 - 구청에서는 세외 수입업무담당, 사업소는 세입업무 담당</p> <p>·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팀·과 서무업무담당(일상경비)</p> <p>·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 담당자</p>	<p>2. (현행과 같음)</p> <p>3. 제1관서(읍·면·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 별도 지정)</p> <p>-----</p> <p>-----</p> <p>-----</p> <p>-----</p> <p>·<u>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팀장·과장(일상경비)</u></p> <p>-----</p> <p>-----</p> <p>-----</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b>【별표 1】</b></p> <p style="text-align: center;">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th> <th style="width: 50%;">기타 관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구 청                      읍 면 동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건 설 환 경 사 업 소                      문 화 예 술 회 관                      농 산 물 도 매 시 장 관 리 사 무 소                      상 수 도 사 업 소                      여 성 문 화 회 관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시 립 도 서 관                      &lt;신설&gt;                      &lt;신설&gt;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외의 관서                 </td> </tr> </tbody> </table>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 관서	구 청 읍 면 동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건 설 환 경 사 업 소 문 화 예 술 회 관 농 산 물 도 매 시 장 관 리 사 무 소 상 수 도 사 업 소 여 성 문 화 회 관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시 립 도 서 관 <신설> <신설>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외의 관서	<p><b>【별표 1】</b></p> <p style="text-align: center;">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th> <th style="width: 50%;">기타 관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구 청                      읍 면 동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건 설 환 경 사 업 소                      문 화 예 술 회 관                      농 산 물 도 매 시 장 관 리 사 무 소                      상 수 도 사 업 소                      여 성 문 화 회 관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시 립 도 서 관                      포 향 미 술 관                      서 울 사 무 소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외의 관서                 </td> </tr> </tbody> </table>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 관서	구 청 읍 면 동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건 설 환 경 사 업 소 문 화 예 술 회 관 농 산 물 도 매 시 장 관 리 사 무 소 상 수 도 사 업 소 여 성 문 화 회 관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시 립 도 서 관 포 향 미 술 관 서 울 사 무 소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외의 관서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 관서								
구 청 읍 면 동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건 설 환 경 사 업 소 문 화 예 술 회 관 농 산 물 도 매 시 장 관 리 사 무 소 상 수 도 사 업 소 여 성 문 화 회 관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시 립 도 서 관 <신설> <신설>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외의 관서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 관서								
구 청 읍 면 동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건 설 환 경 사 업 소 문 화 예 술 회 관 농 산 물 도 매 시 장 관 리 사 무 소 상 수 도 사 업 소 여 성 문 화 회 관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시 립 도 서 관 포 향 미 술 관 서 울 사 무 소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외의 관서								

**입법예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 3. 26.

포항시 공고 제2009-487호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하수도법」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의 오수 및 침전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내 오수 및 침전물을 전량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와 분뇨수집·운반업자 간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시 전량 위탁처리 하도록 하고 있는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별 특성(청소관리상태, 미생물상태, 처리공정)에 맞지 않으므로 시민들에게 불신을 초래
-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

2. 주요내용

- 분노의 처리의무 규정 삭제 (안 제20조)

3. 관련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② ~ ③ (생략)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 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② ~ ③ (생략)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4.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환경위생과 오·폐수담당,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전화 270-3105, FAX 270-3090, E-mail : bullssr@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분뇨의 처리의무) ① 시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구역 안의 오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한다.</p> <p>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년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내부 청소시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니농축조, 농축오니저류조 및 침전조의 오니를 전량 제거하여 탈수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 처리 하여야 한다.</p> <p>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 및 침전물을 전량 분뇨수집·운반 업체에게 위탁처리한 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거나, 밀폐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은 분뇨 수집운반 제외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p>	<p>〈삭 제〉</p>

공 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폐차코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 (150만원이하의 범칙금)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포항 시장 박승호



2009. 03. 27.

포항시 공고 제 2009 - 495호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 1. 공 고 기 간 : 2009. 3. 30. ~ 2009. 4. 13. (15일간)
- 2. 폐 차 장 소 : 신진폐차장, 포항종합폐차장, 동해지구종합폐차장,  
홍해종합폐차장, 태평양종합폐차장(주), 대원종합폐차장

- 3. 폐차 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
- 4.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자  
☎(054)270-3641
- 5.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 6. 강제처리대상차량 : 붙임 내역참조



## 광고처리 내역

◆ 총건수 : 15 ◆ 공고기간 : 2009-03-27에서 2009-04-13까지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차 명	주 소	방치장소	이해관계
	성	명				
2009-3	01머3885 김현철	쏘나타III2.0텍시 620118-*****	인천광역시계양구용중 동211번지6호,7동구프 라자26/6 408호	포항시 남구 대도동 159-6번지 통일교 회 뒷편 이면도로상 에	고양경찰서경교 의정부시청환위 인천 연수경찰서경교 포항시남구청건교	
2009-4	06가2074 홍순식(한주자동 차상사)	EF쏘나타LPG 740821-*****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 동 618번지 29호 "상품 용"	포항시 남구 오천읍 856-5 고향식당 근 처 도로상에	대구북부경찰서교통 대구서부경찰서 경교 대구광역시북구청체무,환경,교 통 포항시북구청건교 파주시청도미	
2009-9	경북29다8562 박무희	쏘나타III1.8DOHC 661215-*****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 읍 육통리 956번지 13/2	포항시 북구 용흥동 제일교회 근처 연하 제 주차장내에	경주시청안강,교행 경주경찰서경교 삼 성카드(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사건2003카단2821 현대캐피탈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사건2003카단2961 아레스유동 화전문유한회사 서울 강남 여산 수타타 위19사건2004카단40373 대구광역시 북구청교통 포항시북구청건교 LG카드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 지단지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성명	차명 주민번호	주소	방치장소	이해관계
2009-11	경북28가7391 장우식	티코(TICO) 6803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129번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320 금장마 을입구 도로변상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청 교행 포항시북구청건교 포항시남구청 건교
2009-12	경기64나3913 (주)현대시스콤	겔로퍼 13441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번지 1호	포항시 남구 대잠동 974-6 하늘채원룸 앞 도로상에	군산시청교행 국민연금관리공단이천 지사가일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정수 이천세무서징세 이천시청환보,세무 국 민건강보험공단이천시사정수 근로복 지공단서울관악지사정수 서울특별시 중구청교지 이천시차량등록사무소교 행 근로복지공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94-26720057가단122956
2009-19	경북27마8432 김석진	프린스장에인차 2901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칭하면 월포리 203번지 7호 (61-9633)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도중학교 후문 인 근도로상에	포항시청교행 포항북부경찰서교통 포 항시북구청세무,건교 포항시차량등록 사업소차등 포항시남구청건교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성명	차명 주민번호	주소	방치장소	이해관계
2009-29	경북29나7000 김석진	리오 7211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528번지 16/6 대 우그린맨션 나동 302호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3-4 포항자동차 종합정비	포항북부경찰서 교통 포항시 차량등록 사업소차등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북 부지사징수 상륙수제일차유동화진문 유한회사 서울 여의도동 15-282004카 단17667 포항시 북구 청세무, 건교 포항 남부경찰서경교
2009-30	경북21나3429 이남출	엘란트라 20030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121번지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 동해지구중 합폐차장내에	포항시청교행 포항북부경찰서교통 포 항시 북구 청세무 포항시 차량등록사업 소차등
2009-32	경북41구5301 손준호	마티즈 760117-*****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 동 130번지 15/4 태성맨 션 101동 110호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 동해지구중 합폐차장내에	경산경찰서교통 삼성캐피탈(주) 서울 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사건 2002카단51609 경주시청교행 경산시 청교행, 세무 삼성캐피탈(주) 서울특별 시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단지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성명	차명		주소	방치장소	이해관계
		주	민번호			
2009-33	경북3가9064 조창수	티코(TICO) 630226-*****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동 547-1(4/1)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 동해지구중 합폐차장내에	포항북부경찰서교통 포항시차량등록 사업소차등 포항시남구청세무	
2009-34	경북7보5822 이진구	포터 45052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 읍 육통리 244번지 26 호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 동해지구중 합폐차장내에	경주시청시민, 교행, 안강, 환보	
2009-35	경북6가5501 손정익	컴비 36110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 의동 240-11(15/3)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 동해지구중 합폐차장내에	포항시북구청환위, 세무, 사환, 주민 포 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근로복지공 단포항지사장수 포항시청교행, 환위 서 울보증보험(주) 서울특별시 중로구 연 지동 136-742001카단32378 포항북부 경찰서교통 아시아자동차(주) 서울특 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단지	
2009-47	경북27나2807 김송자	수퍼살롱2.0AT 5601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264번지 3/세종황제맨션 906호	포항시 북구 홍해읍 약성리 동회관 뒤 노 상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대구광역 시 수성구청세무 포항시북구청세무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 3. 31.

포항시공고 제2009 - 497호

공 인 공 고

- 1. 등록공인 사용개시일 : 2009. 3. 31
- 2. 등록사유 : 인증기 신규 설치
- 3. 등록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제 증 명 포항시남구 상대동장인 발 급 용	한글전서체 2.1Cm정방형		인증기 신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09년 3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3. 30.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채 수 일 자		2009년 3월 10일								
검 사 기 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검사항목(기준)	정수장·상수원·공급지역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안계댐수		영천댐수	형산강 안계	부류수	진전지	늘태지	곡강천	복류수
		동지역 전역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미 생 물	일반세균 (100CFU/ml)	0	0	0	0	0	0	0	0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 강 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불소 (1.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2	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암모니아성질소 (0.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질산성질소 (10mg/l 이하)	1.5	0.5	0.8	2.0	2.1	0.2	0.7	0.9	
건 강 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보론(B) (1.0mg/l 이하)	0.040	0.026	0.031	0.049	0.048	불검출	0.022	0.031	
	기타 7개 항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mg /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 독 제 및 소 독 부 산 물	유리잔류염소 (4.0mg/l 이하)	0.50	0.27	0.85	0.32	0.23	0.15	0.86	0.87	
	총트리할로메탄 (0.1mg/l 이하)	0.0500	0.0290	0.0471	0.0475	0.0385	0.0301	0.0498	0.0415	
	클로로포름 (0.08mg/l 이하)	0.02500	0.02202	0.03828	0.01653	0.00800	0.01907	0.02430	0.02905	
심 미 적 영 향 물 질	기타 7개 항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수소이온농도 (5.8~8.5)	7.5	7.6	7.5	7.7	7.5	7.1	7.1	7.2	
	경도 (300mg/l 이하)	104.6	73.7	84.9	121.4	124.3	29.9	55.3	91.3	
수 도 꼭 지 지 역	동(Cu) (1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타 13개 항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검 사 항 목 (기 준)	용 흥 동	송 동 리	환 호 동	해 도 2 동	택 전 리	문 덕 리	구 룡 포 리	마 산 리	
일반세균 (100CFU/ml)	0	0	0	0	0	0	0	0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암모니아성질소 (0.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유리잔류염소 (4.0mg/l 이하)	0.57	0.33	0.55	0.39	0.28	0.16	0.83	0.85		
동 (1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아연 (3mg/l 이하)	0.005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91	0.0028	불검출	0.0353		
염소이온 (250mg/l 이하)	38	11	12	54	50	11	29	14		
철 (0.3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망간 (0.3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8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관 리 책 임 자	상수도사업소장 김 홍 식									

- ▶ 수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